

## 의학과·의과학과 석·박사학위 논문심사제도 운영세칙

1996. 3. 1. 제정

2018. 2. 10. 개정

### 1.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35조와 제 36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논문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

②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9.)

제35조의 2(공동논문지도교수) 각 대학(원)장은 소속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 36 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9., 2015.12.29.)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개정 2015.12.29.)
2. 정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신설 2015.12.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 2.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선정

가.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학칙 제 3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및 47조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명,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논문지도교수: 1명
- 2) 본 대학교수: 석사학위 논문 심사는 2명,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3명(사정에 따라 타 대학교수도 가능)
- 3) 타 대학교수: 1명(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한함)

#### 대학원 학칙

제35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15.10.26.)

②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조(논문심사위원)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15.10.26.)

③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4.1.29)

④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제24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2.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나. 심사위원 선정: 본 대학(원)에 논문심사위원으로 제청되는 교수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1)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는 학기에 선정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0.)
- 2) 본 대학(원)교수 심사위원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24조 및 47조에 따라 선정한다.
- 3)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3. 박사학위논문 심사

가.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 심사

1) 연구계획서의 정의: 박사학위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법들을 제시하는 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서 제출자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한 주요예비실험 결과를 수록할 수도 있다. 본 계획서는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구계획서 심사

① 시기: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이 가능하며, 2학기 이내에는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은 각 학기 초(4월중 또는 10월중)에 한다.

②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1부 (제출용)
- 심사위원 제청서 1부 (지도교수 작성)

3) 심사과정

①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최종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② 연구계획서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연구계획서 심사는 논문 최종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한다. 심사위원장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중간보고서 제출

1) 시기: 연구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논문심사의 직전 학기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중간보고서 1부: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중간보고서와 함께 인비로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중간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제출을 연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라. 박사학위논문심사: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하고 직전 학기 이전에 중간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 8장 제 1절과 2절의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를 신청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p>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의 체제와 제출절차</p> <p>제44조(논문의 체제) ①학위청구논문의 표제지 등 체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따르되, 본문과 참고문헌은 전공학문분야별 전문학술지의 편집 체제에 따른다. ②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불어·독일어·중국어의 4개 국어 중 하나로 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45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논문제출자는 심사료를 납부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6조 (논문제출년한) 제16조의 규정 중 재학년한의 규정은 논문제출년한에 준용한다.</p>
<p>제2절 논문의 심사</p> <p>제47조(논문심사위원)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15.10.26.) ③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4.1.29) ④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1.29)</p> <p>제48조(논문의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1회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9.)</p> <p>제49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p>

제50조(심사위원회의 회의정족수)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는 2인 이상,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의 합격판정) ①각 대학원 학위논문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사정한다.

②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0.10.13)

제52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①각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논문을 정해진 기일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②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 2(재학 중 논문 발표)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②실기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1.29)

제53조(박사학위논문의 발표) 박사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은 국제 또는 전국수준의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3. 1. 제정)

이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 개정)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 개정)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 개정)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 개정)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 개정)

이 내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0. 개정)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